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15
----------	-----

2023년 2월 2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이병도 의원 외 2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2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병도 의원)

### 가. 제안이유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빈도와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재난은 예측이 어려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므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상 안전취약계층 관련 포함사항을 규정(안 제49조제2항).

(2)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57조제1항).

###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49조제2항) 토록 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안 제57조제1항)을 정비하려는 것임([표] 참조).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복구활동 등) ①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복구활동 등) <u>시장</u> 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략) <u>&lt;신설&gt;</u>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 안전취약계층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u>시장</u> 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u>&lt;신설&gt;</u>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u>시장</u>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p> <p>2.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p> <p>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p> <p>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p> <p>5.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p>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② (현행 제4항과 같음)</p>
---	--

-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현행 조례 제2조제12호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세 미만의 어린이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자력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과 이성적 판단이 부족하여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에 제약 또는 한계가 있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음.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제24조1)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전략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 추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 상 재난유형 분류기준에 안전취약계층 각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등 안전취약계층 관련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2022 추진방향

- 1) 제24조(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 서울시 재난유형 분류기준(서울시 안전관리계획 2022 중 일부 발췌)

분야	유형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부서
자연 재난 (10개)	풍수해	풍수해	하천관리과
	산사태	산사태	산지방재과
	가뭄	가뭄	물순환정책과
	지진	지진	안전지원과
	황사	황사	대기정책과
	조류	조류	물순환정책과
	폭염	폭염	안전지원과
	대설·한파 (2개)	설해	도로관리과
		한파	안전지원과
	낙뢰 등 기타	낙뢰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폭발	화재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중 략>

공통 (21개)	재난안전관리체계 (12개)	물재생센터 마비	물재생시설과
		소각시설 마비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마비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비	생활환경과
		버스파업	버스정책과
		택시파업	물류정책과
		지하철파업	도시철도과
		시청사 마비	총무과
	국가핵심기반사고 (2개)	식용수 공급사고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
		공동구 사고	도로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지원 (4개)	노인안전대책	어르신복지과
		장애인 안전대책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여성 안전대책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대책	안전지원과

- 또한, 시는 2013년부터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2년의 경우 총 15억 12백만원(시비 9억 9천만원+구비 5억 22백만원)을 투입해 22,864개의 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등의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함.

**[2022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결과]**

**사 업 비 : 총 1,512백만원 (시비 990, 구비 522)**

○ 집행액 : 총 1,354백만원 (시비 990, 구비 369) ※ 시비 전액집행 완료

**점검 및 정비 실적**

○ 정비 가구 수 : 22,864가구 (목표 24,000가구 대비 95.2%)

○ 점검·정비 분야별 실적

구 분	전 기	가 스	소 방	보일러 등
정 비 가구 수	6,515가구	6,458가구	7,959가구	1,932가구
정 비 내 역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노후 전기장판 교체 등	가스 타이머, 가스 배관, 밸브 등	화재감지기, 경보기, 방염포, 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구조물품 등	보일러 정비, 연통, 밸브 등

- 따라서, 안 제49조제2항에서 안전취약계층과 관련이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재원 조달 방안’ 등의 사항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 시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또한, 안 제57조제1항은 현행 조례 제57조제2항의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및 같은 조 제3항의 ‘안전취약계층 거주시설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지원에
-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까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하여 이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92개소를 지정하여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장애인복지시설에 마스크 지원 등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기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기본권 보장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그 밖에 안 제47조는 현행 조례에 오기된 항번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2월 06일

발 의 자: 이병도, 김규남,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춘곤, 박영한, 박철성,  
서준오, 성흠제, 송도호,  
아이수루, 유정인, 유정희,  
, 윤종복, 이민옥, 이상욱,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만균, 한 신,  
홍국표 의원(25명)

### 1. 제안이유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빈도와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으며 이렇게 발생된 재난은 예측이 어려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므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상 안전취약계층 관련 포함사항을 규정(안 제49조제2항).
- 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57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같은 조 중 제1항의 항번호를 삭제하고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 안전취약계층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2.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복구활동 등) ① 시장은 <u>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47조(복구활동 등)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lt;신 설&gt;</p>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 안전취약계층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u>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u>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신 설>

1.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2.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삭 제>

<삭 제>

② (현행 제4항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략)